

서울중앙지방법원

제5민사부

결 정

사 건 2017라52 손해배상(국)

원고, 상대방 1.

2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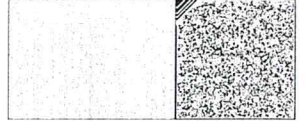
3.

4.

5.

6.





7.

8.

9.

10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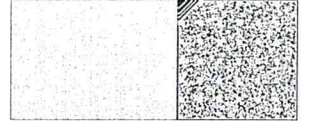
11.

12.

13.

14.





문서출력용바코드

15.

16.

17.

18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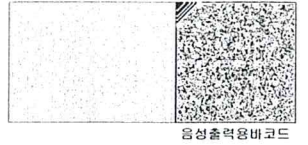
19.

20.

21.

22.





피고, 항고인 대한민국
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박상기
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유일한, 부효준

제1심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 12. 15.자 2016가소5944347 결정

주 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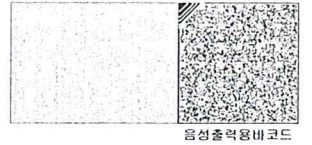
1.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.
2. 원고들의 이 사건 문서제출신청을 기각한다.

이 유

1. 항고인의 주장

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신청에 따라 2016. 12. 15. 피고에게 "이동통신사 등에 각원 고의 각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한 자료제공요청서(별지 참조), 각 원고의 각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한 구체적인 사유(구체적인 사건과의 연관성, 연관성이 있다면 해당 사건의 사건번호와 사건명, 혐의내용 및 피의자 또는 피고인명 등)"의 제출을 명하였는데(이하 '이 사건 제출대상 문서'라 한다), 피고는 ① 원고들에게 형사소송법상의 열람 등사권이 존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사법상 인도·열람청구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제출대상 문서가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2호의 인도·열람 문서에 해당하지 않고, ② 이 사건 제출대상 문서는 '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가지고 있는 문서'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에 따른 제출의무도 존





재하지 아니함에도 문서의 제출을 명한 제1심 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.

2. 판 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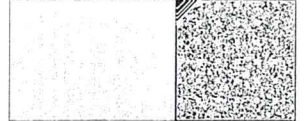
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국가기관에게 통신자료제공요청서 및 구체적 요청사유를 인도·열람하도록 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, 이러한 국가기관의 인도·열람 의무는 공법상 의무로 사법상 의무가 아니므로 제출대상 문서가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인도·열람문서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. 또한 위 문서가 소송에서 당사자들에 의하여 인용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의 인용문서라 할 수도 없다.

다만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문서라도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서제출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(대법원 2008. 4. 14.자 2007마725 결정 등 참조).

그러나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, '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'는 국가기관이 보유·관리하는 공문서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, 이러한 공문서의 공개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(대법원 2010. 1. 19. 자 2008마546 결정 참조). 따라서 이 사건 제출대상 문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서 공개 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문서로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다.

3. 결 론





원고들의 이 사건 문서제출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,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2018. 2. 21.

재판장

판사

이근수



판사

장지용



판사

강 건





정본입니다.

2018. 3. 5.

서울중앙지방법원

법원사무관 송찬석



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이 정본을 송달받은 날(발송송달의 경우에는 발송한 날)부터 7일 이내에 재항고장을 민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원심법원인 이 법원(서울중앙지방법원)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
※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번호조회 메뉴를 이용하거나, 담당 재판부에 대한 문의를 통하여 이 문서 하단에 표시된 발급번호를 조회하시면, 문서의 위,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